

|            |        |                              |                    |
|------------|--------|------------------------------|--------------------|
| 야외<br>도장시설 | 강선건조업  | 총면적 10,000m <sup>2</sup> 미만  | 1.4423             |
|            |        | 총면적 150,000m <sup>2</sup> 미만 | 2.0313             |
|            |        | 총면적 150,000m <sup>2</sup> 이상 | 5.5656             |
|            | 강선건조업외 | 총면적 10,000m <sup>2</sup> 미만  | 0.5891             |
|            |        | 총면적 150,000m <sup>2</sup> 미만 | 1.1781             |
|            |        | 총면적 150,000m <sup>2</sup> 이상 | 4.7124             |
| 보고서작성      |        |                              | 기향과 나향의 합을 4로 나눈 값 |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정기점검 대상 배출시설(옥내도장, 야외도장). 야외도장시설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개소로 취급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야외도장시설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개소로 취급

주4 : 옥내도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이나 회수에 의한 시설 및 그 밖의 방지시설

## ●환경부고시제2017-123호

2017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2017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865,936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1,446천명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17-124호

2017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359,972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1,446천명으로 한다.

반영계수는 0.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